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제3조제2호 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분리(分離)"란 두 개 이상의 건물이 서로 충분히 떨어져 있어 공기의 입구와 출구가 간섭받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고, 한 개의 건물인 경우에는 벽에 의하여 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작업원의 출입구나 원자재의 반출입구가 서로 다르고, 공기조화장치가 별도로 설치되어 공기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를 말한다.

나. "구획(區劃)"이란 동물실험시설 내의 작업소와 작업실이 벽·칸막이 등으로 나누어져 공정간의 교차오염 또는 외부 오염물질의 혼입이 방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작업원과 원자재의 출입 및 공기조화장치를 공정성격에 따라 공유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 "구분(區分)"이란 공간을 선이나 줄, 칸막이 등으로 충분한 간격을 두어 착오나 혼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나누어진 상태를 말한다.

2. 동물실험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각 시설은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육실

- 1) 실험동물의 종류별로 사육실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야 한다.
- 2) 실험동물의 종류와 수에 따라 개별 동물의 사육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적절한 재질의 사육상자 또는 사육장을 갖추어야 한다.
- 3) 내벽과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편리한 마감재를 사용하며 균열이

없어야 한다.

4) 바닥은 요철이나 이음매가 없어야 하고 표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5) 천정은 이물이 쌓이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실험실(동물의 부검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 동물의 부검이나 수술에 사용하는 물품, 기구, 시약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부검대 등의 실험동물 부검이나 수술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부대시설

1) 사료 및 사육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구획 또는 구분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소독제, 청소도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구획 또는 구분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삭제 <2017. 1. 5.>

3. 동물실험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작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동물실험시설 운영관리

1) 동물실험시설의 점검 및 소독

2) 동물실험시설의 이용 및 교육

3)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운영

나. 실험동물 사육관리

1) 실험동물의 취급 및 사육관리

2) 실험동물의 검역 및 순화

다. 안전관리

1) 종사자 건강 등 안전관리

2) 재해 유발 가능물질 및 생물학적 위해물질 취급 및 관리

3) 응급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